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25607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5. 원고에게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9,884,9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481,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경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redacted]시 C 지상에 건물 294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1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52,249,260원(= 취득세 49,424,980원 + 지방교육세 2,824,280원)을 감면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B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설립중의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2015.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5. 8. 27. 설립되었는데, 2015. 9. 10. 위 2015. 6. 29.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서 지분 100%를 소유하며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

마. 2019년도 [redacted]북도 지도점검 결과 원고에 대한 취득세 추징분이 지적되었고, 피고는 '산업단지내 신증축에 따른 감면은 2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취득일(2013. 11. 18.)로부터 2년 이내 현물출자하였고,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바.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79,223,290원(무신고 가산세 9,884,9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9,913,320원 포함), 지방교육세 3,962,18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137,9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960,1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429,790원 포함), 합계 88,145,610원을 부과·고지(이하 가산세 부과·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내역			
			본세	가산세		
				무신고	납부불성실	합계
취득세	1,765,178,000	2.80	49,424,980	9,884,990	19,913,320	79,223,290
지방교육세	14,121,424	20.00	2,824,280		1,137,900	3,962,180
농어촌특별세	35,303,560	10,00	3,530,350		1,429,790	4,960,140
합계			55,779,610	9,884,990	22,481,010	88,145,610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기계, 장비 제작 및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법인과 사업하기를 선호하고 경비처리나 보조금 지급에도 유리한 점이 있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을 현물출자하였다. 당시 원고가 자문을 구한 세무사와 법무사 모두 현물출자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이 오인할 이유가 있었고,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감면혜택 취소를 알려주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납부가 지체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는 4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가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면혜택 취소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게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원고의 현물출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취득세 등 본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납세의무자 자신의 책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 및 추징조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추징조항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시에 토지, 건물과 같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상처분인 점에서 매도, 교환 등과 다를 것이 없고 그 대가로 배정받은 주식이나 지분도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여 매각과 실질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현물출자는 이 사건 추징조항의 '매각'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바2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이 별개의 인격을 갖는 권리주체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1인 주주라고 하여도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실제로 소유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조항의 문언 해석상 원고의 현물출자가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설령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세무사와 법무사가 이와 다른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원고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오직 그 적법성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조세소송에서는 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반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06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 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